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와 종교교육



지영준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

법무부와 헌법재판소 그리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활동했다. 현재 법무법인 저스티스의 대표 변호사이며 미래목회포럼 인권위원,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의 기획 실행위원직을 맡고 있다.

들어가며

그동안 교육계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단체와 조례제정을 찬성하는 단체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어 왔음에도 현재 17개 광역단체 중 경기, 광주, 서울, 전북 등 4곳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다.

이중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2011년에 약 9만7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발의로 제정되었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소위 대광고 강의석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2010년 4월 22일 이후 곧바로 추진되었다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와 종립학교(미션스쿨)의 종교의 자유

특히,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그 제정 목적이 종립학교(미션스쿨)의 '종교의 자유'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학생의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① 학생에게 예배·법회 등 종교적 행사의 참여나 기도·참선 등 종교적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② 학생에게 특정 종교과목의 수업을 강요하는 행위, ③ 종교과목의 대체과목에 대하여 과제물의 부과나 시험을 실시하여 대체과목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 ④ 특정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학생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등의 차별행위, ⑤ 학생의 종교 선전을 제한하는 행위, ⑥ 특정 종교를 비방하거나 선전하여 학생에게 종교적 편견을 일으키는 행위, ⑦ 종교와 무관한 과목 시간 중 특정 종교를 반복적, 장시간 언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학교의 장은 특정 종교과목의 수업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하여 이를 대체할 과목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조례 제16조 제3항, 제5항).

위와 같이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생들에게 ‘그 자체로서 직접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또한, 위 조례는 ‘학생 인권 옹호관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조례 제48조, 제49조). 필자가 보기에 이러한 권고는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은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제22조). 이와 같이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법률의 위임이 없이 중립학교(미션스쿨)의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 차별 행위의 금지

또한,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다음과 같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개정된 조례는 제5조 제3항에서 차별적 언사나 혐오 표현을 금지하고 있는데, 사실상 ‘포괄적 차별 금지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조례 제5조).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③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 그리고 학생은 제1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9.21.>

여기서 필자는 위 조례가 열거하고 있는 차별금지 사유 중 나이,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적 등이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차별금지 사유인지 의문이 든다.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

필자는 아직도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5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성적 지향’이라는 용어가 무슨 뜻인지 분명하게 다가오지 않는다. 다만, 위키백과 사전에는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은 자신이 이끌리는 이성, 동성, 혹은 복수의 성 또는 젠더를 나타낸다’고 하고 있다.

이렇듯, 성적 지향에 이성애, 동성애뿐만 아니라, 복수의 성에 이끌리는 양성애가 포함된다는 점에서,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혼인 제도는 일부일처제(一夫一妻制)로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최근 2017년 6월 30일 독일 하원은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표결을 하였는데, 이 때 독일 하원의 무슬림 의원 전원이 동성결혼 합법화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무슬림 의원이 동성결혼 합법화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이유는, 이들은 ‘동성결혼 합법화’가 일부다처제(一夫多妻制, polygamy)의 문을 열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한다.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금지

더욱이 서울「학생인권조례」제5조 제1항은 성적 지향 외에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있다.

필자는 도대체 ‘성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으나 일찍이 성 정체성으로 인한 차별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으므로 간접적으로

2012년 11월, 워싱턴 주 올림피아에 있는 에버 그린 state 칼리지에는 고등학교와 대학교가 함께 쓰는 수영장과 사우나 있었다. 어느 날 여성용 사우나에 들어가던 젊은 여학생들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보고 괴성을 지르고 뛰쳐 나오는 일이 일어났다. 그 사우나 실에는 (자기를 여자라고 여기는) 한 남자가 자신의 남성 성기를 노출시키며 나체로 앉아 있었던 것이다. 여학생들은 큰 충격에 빠졌고, 학부모들은 격분했지만, 학교 당국은 주법을 따라야만 했을 뿐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 ‘성 정체성’은 워싱턴 주의 차별금지법으로 보호된다.’

그 의미를 유추해 볼 수 있을 뿐이다.

이렇듯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따르면 초 중 고등학교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을 구분하여 부르는 것도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언사나 행동에 해당하게 된다(제5조 제3항). 그리고 목욕탕과 화장실을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는 것도 차별이 된다.

결론

결론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제정한 ‘학생인권조례’가 법령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하였던 새로운 권리를 학생에게 부여하거나 학교운영자나 학교의 장, 교사 등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조례는 위법한 것이다.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추98 판결

더욱이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국가에 지우고 있다.

결국 서울「학생 인권조례」는 중립학교(미션스쿨)의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고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국가사무’에 속하는 인권 관련 사무에 관한 조례로서 위법한 것이다. C



1. 성공할 수 없는 동성애 혁명. 275쪽



기독교 세계관에 비추어 본 역량중심 교육과정



김종훈 (홍익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미국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에서 교육과정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로 일하고 있다. 가르침과 배움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으로 예비교사들을 길러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임을 늘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이다.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성경적인 세계관에 충실하게 개발된다면 그 모습은 어떤 것일까? 국가 교육과정 문서와 각급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성경, 은혜와 같은 단어들 이 등장한다면 우리는 그런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성경적이다’ 또는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교육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예컨대, 교육과정 총론의 첫 머리가 홍익인간의 이념 대신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본래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셨으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 그리고 다시 사심으로 구속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시키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에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과정은 ...”과 같이 시작한다면 어떨까? 이런 경우라면 우리는 국가 교육과

정을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것이라 부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문서의 내용만 가지고 성경에 대한 적부를 따지는 것은 불충분하다. 물론 헌법이 이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지만(예컨대, 헌법 제21조, 제31조), 설사 그것이 가능하다 해도 ‘교육과정=문서’라는 공식은 너무도 협소한 정의이기 때문이다.

기독교 세계관 -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의 문제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한 교육은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와 같은 문서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는지가 아니라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믿음을 기초로 성경적 세계관의 관점에서 지식과 교과, 학문과

세상을 이해하려는 교사와 학생의 가르침과 배움을 통해 구현되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알버트 그린(Albert Green) 역시 그의 저서 『기독교 세계관으로 가르치기』에서 ‘교육의 내용보다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지 않았던가? 어떤 내용을 가르칠 것인가의 문제는 분명 교육과정의 핵심적인 주제임에 틀림이 없지만, 보다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그러한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내용을 ‘어떻게’ 접근하고 가르칠 것인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 ‘어떻게’를 통해, 리차드 에들린(Richard Edlin, Jr.)의 말대로 교육은 중립성의 신화를 극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글의 초점은 교육과정이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는가의 문제보다 교육과정을 어떻게 실행하는 것이 성경이 추구하는 바와 어긋나지 않는가의 문제에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 역량 중심교육의 방향성 문제

지난 2015년 9월,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했다. 이 교육과정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제7차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수시 개정의 취지에 따라 2007년과 2009년에 이어 가장 최근에 개정·고시된 현행 교육과정이다. 이 교육과정은 2017년 3월, 초등학교 1-2학년을 시작으로 해마다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되어, 오는 2020년 3월부터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이르는 전 학년에 적용될 예정이다.

과거 여타의 교육과정과 비교할 때, 2015 개정 교육과정이 갖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인가?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에 따르면 첫째, 미래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을 함

양하도록 하기 위해 ‘핵심 역량’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둘째, 인문·사회·과학기술 분야의 기초 소양과 인성교육을 강화하며, 셋째, ‘배움을 즐기는 행복교육’이 가능하도록 교과목의 학습량을 적정화하고, 넷째,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을 개선하여 교실 수업을 혁신하는 것이다.

교육부가 언급한 네 가지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을 들여다보면 기초소양 교육과 인성교육의 강화, 학습내용의 적정화, 수업혁신 등은 과거 여러 차례의 교육과정 개정에서 교육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이미 부분 혹은 전체적으로 논의되었던 주제들을 알 수 있다. 이와 달리, 핵심 역량에 대한 언급은 이상 세 가지 기본 방향과 달리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내용이다. 이 점에서 핵심 역량은 여타의 국가 교육과정과 구별되는, 이번 교육과정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역량중심 교육과정’이라고도 부르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역량을 중심에 둔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우리의 학교 교육이 여섯 가지 핵심 역량(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을 길러내기 위한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역량중심 교육과정이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전통적인 지식 교육이 갖는 한계를 지적하고, 21세기 사회가 요구하는 맥락적이고, 실천적이며, 활용 가능한 역량이 학교 교육을 통해 길러져야 한다는 담론이 사회 전반에 형성되었기 때문이었다. 학생들이 실생활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춘다면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고 습득하는 전통적 교육에 비해 진일보한 교육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이 글이 설정한 전제(내용 자체보다는 그것을 풀어내는 방법